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7

제출일자 : 2018. 03.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세율 변경(안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감면세율 인하
- **100분의 50 → 1,000분의 375**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13조)

다. 조례 제24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부칙 단서 중 "2018년 1월 1일" 을 "2019년 1월 1일" 로 한다.

라. 조례 제252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부칙 제3조 중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을 "2019년 1월 1일" 로 한다.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92조의2

(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 부칙(대통령령 제2771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2. 6. ~ 2. 2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0분의 50을” 을 “1,000분의 375를”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중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을 각각 “2019년 1월 1일” 로 한다.

조례 제24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 1월 1일” 을 “2019년 1월 1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1,000분의 375를 ----.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 ② (생 략)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 2019년 1월 1일 ----------

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조례 제24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 2019년 1월 1일 ---------- 조례 제24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2019년 1월 1일----------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제92조의2제1항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7., 2017.12.26.>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부칙(대통령령 제27711호) 제1조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77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2.29.>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